

제229회 거창군의회

<정례회>

조례안상정

(조례 2건)

거창군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17-151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017-152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51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을 보강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조정

- 676명 ⇒ 679명(증3명)
- 집행기관의 정원: 662명 ⇒ 665명

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함(안 별표 3)

- 일반직 6급 이하 정원: 증3명
- 현행: 605명(본청266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0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 조정: 608명(본청268명, 의회11명, 직속기관101명, 사업소49명, 읍39명, 면140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4조·제29조·제30조·제38조

나. 예산조치: 연 110,000천원

다. 기타사항

-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3)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17. 10. 31.~11. 20.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거창군 조례 제 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676명”을 “679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62명”을 “66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 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u>676명</u> 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2조(정원의 총수) ----- ----- ----- <u>679명</u> ----- -----
1. 집행기관의 정원: <u>662명</u>	1. -----: <u>665명</u>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4명	2. -----

[별표 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679 676	286 284	14	134 133	70 69	64	54	40	151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647 644	282 280	14	107 106	43 42	64	53	40	151
	4급	1	1							
	4~5 급	3	2		1		1			
	5급	35	11	3	5	4	1	4	1	11
	6급 이하	608 605	268 266	11	101 100	39 38	62	49	39	140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5	2		2	2		1		
지도직 (지도사)		25			25	25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비용 발생 요인: 거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증가에 따른 추가 인건비 발생
- 관련조문: 제2조(정원의 총수)

2. 비용추계의 결과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계
구분	국비						
	세출						
	군비	110	115	120	125	130	600
	소계(a)	110	115	120	125	130	600
총 비 용		110	115	120	125	130	600

3. 관련 의견

- 가축전염병 대응,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및 창포원 운영 등 정부 시책 추진 및 관리 인력 등 보강에 따라 인력증가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 증원 내역: 7급 2명, 8급 1명
- 연간 인건비 증가액: 110,000천원
 - 기본급 100,000천원, 수당 등 10,000천원

작성자: 행정과장 이화기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7~152
----------	----------

제 출 자	거창군수
-------	------

1. 제안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사항을 반영하여 재난 및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현행)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개정)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나. 대책본부 구성 변경(안 제3조)

- 본부장, 차장, 통제관, 담당관, 실무반으로 구성
- 실무반 구성을 상황관리총괄반, 12개 협업기능반,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으로 하고 실무반별 임무와 담당부서를 정함(별표 1)
- 재난유형별로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함(별표 2)

다. 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가동기준을 변경(안 제6조)

- 자연재난, 인적재난, 기반재난 ⇒ 자연재난, 사회재난으로 구분
- 자연재난(가동기준에 따라 3단계로 구분), 사회재난별로 실무반 편성인원을 정함(별표 3~별표 5)

라.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한 상황판단회의 기능 및 구성 등 규정(안 제7조)

- 비상단계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비상근무 편상운영, 근무인원 등을 정함

마. 파견근무자가 사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음을 정함(안 제10조)

바. 재난복구계획 등을 심의하는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 제12조)

사.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도록 정함(안 제13조)

아. 본부장은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현장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자. 위기경보의 발령을 행정안전부 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음을 정함(안 제16조)

차. 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기준을 정함(안 제17조)

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한 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및 피해상황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0조~제21조, 별표 7)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제17조·제66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21조의2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감사실(규제개혁담당)

라. 기타사항

(1) 부패영향평가: 해당사항 없음

(2)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3)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17. 10. 23.~11. 13.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4)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 해당사항 없음

(6) 도내 개정 현황

○ 개정완료(6): 통영, 사천, 하동, 창녕, 거제, 양산

○ 입법예고(2): 김해, 의령

(7) 법제처 입법컨설팅 사례 반영함.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와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2장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운영하는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2. 차장: 부군수
3. 통제관: 재난 총괄부서의 장
4. 담당관: 재난종류에 따른 재난수습 부서의 장

② 제1항에 따른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 보좌

3.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재난의 수습 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필요하면 유관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차장·통제관·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 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 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사회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체계) 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비단계: 별표 3
 2. 비상단계
 - 가. 자연재난: 별표 4
 - 나. 사회재난: 별표 5
- ②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6과 같다.
- ③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과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
3. 별표 4, 별표 5의 비상단계에 따른 비상근무 실시
4.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분석과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5.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군 소속 관련부서의 장과 각 실무반장
3. 해당 재난관련 관계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4. 그 밖에 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기관 직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3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1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거창군 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장과 소방 관련 본부장(다만, 소방관련 본부장이 참석 불가능한 경우 소방 관련 총괄과장이 대신 참석할 수 있다)

2. 기능별 협업부서의 장

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공무원

③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
-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⑤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⑥ 의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① 본부장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 ② 본부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장소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수습상황
5.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중앙 및 경상남도 대책본부장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① 군수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재난현장 조치 및 대응지원) 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에 있어서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대응 체계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③ 본부장은 재난수습 홍보를 위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및 구조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와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 통일된 입장을 유지해야 한다.

제19조(재난상황의 통보방법)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재난상황을 통보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의 방법으로 한다.
② 본부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사회재난에 대한 지원

제20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군수는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하는 경우에는 별표 7에 따른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21조(피해상황 신고 등) 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에 피해 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자료를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군수 또는 읍·면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회재난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과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운영 조례」 제4조 중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를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로 한다.

[별표 1]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3항 관련)

자연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 황 관 리 총 괄 반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1)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2)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3)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4)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5) 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6)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7) 화상회의 준비·운영 8)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안전 총괄과
	상황보고서 작성팀	1)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2)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해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3)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가)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나)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다) 지진: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5)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6)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8) TV 방송 모니터링 9) 민심동향, 미답사례 등 확인	안전 총괄과 재난 수습 주관부서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1)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2)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3)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4) 비상근무 단계 결정 5)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6)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7)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8)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 운영 지원	안전 총괄과
	행정지원팀	1)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2) 상황실 통신·전산장비 운영 및 지원 3) 상황근무자 명령 및 복무 단속 4) 본부장·차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행정과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긴급생활 안전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 정책과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 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에너지 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 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 감사실

구 분		담 당 업 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반	재난관리 및 자원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 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 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 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 정책과
	사회질서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 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사회재난 실무반별 업무

○ 조직 및 담당업무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통제관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상황관리총괄반	상황관리 총괄팀	1)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2)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3) 상황판단회의 및 보고회 자료 준비 4)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안전총괄과 행정과
	수습상황 파악팀	1)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2)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3)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4) 지역사고수습본부, 거창군 대책본부, 긴급구조 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5)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6)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7)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안전총괄과 재난수습 주관부서
협업기능반	긴급 생활안정 지원반	1)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2)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3)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4)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5)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6)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복지 정책과
	재난현장 환경 정비반	1)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2)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환경과
	긴급통신 지원반	1)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2)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3)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행정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	1)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2)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문화관광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업 기능 반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복구반	1)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2)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3)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경제교통과
	재난수습 홍보반	1)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2)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3)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4)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5)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6)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7)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8)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9) 현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기획감사실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1)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공동활용시스템 운영 2)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Sharing System: DRSS)가동 3)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4)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5)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6)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안전총괄과
	교통대책반	1) 재난발생지역 해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2)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3) 교통두절구간(도로, 항공) 실태 파악 보고 4)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경제교통과
	의료 및 방역서비스 지원반	1)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3)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4)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5)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6)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2)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3)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4) 수해주택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복지정책과

구 분		담당 업무	담당부서
협 업 기 능 반	사회질서유지 유지반	1)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2)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3)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4)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5)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거창 경찰서
	수색,구조·구급반	1)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2)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3)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4)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5)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거창 소방서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		관계부서 및 유관기관별 자연재난관리 12개 협업 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지원(거창경찰서, 거창소방서, 거창교육 지원청, 육군8962부대 6대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남북부 지사, 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KT거창지사, 한국농어촌 거창함양지사, 지역자율방재단 등 단체)	

[별표 2]

재난수습 주관부서(제3조제3항 관련)

재난관리 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행정안전부	가. 정부중요시설 사고 나. 화재사고 다.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라.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 · 지진 · 화산 · 낙뢰 · 가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 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마.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재무과 안전총괄과 " " "
문화체육관광부	가.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체육시설사업소 문화관광과
농림축산식품부	가. 가축 질병	농업기술센터
	나. 저수지 사고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가. 가스 수급, 가스 누출 사고 나. 전력 사고	경제교통과
보건복지부	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	보건소
환경부	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식용수(지방상수도를 포함한다)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황사	환경과
고용노동부	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경제교통과
국토교통부	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댐 사고 나. 도로터널 사고 다. 육상화물운송 사고 라.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	가. 건설과 나. " 다. 경제교통과 라. 도시건축과
원자력안전위원회	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	안전총괄과
문화재청	가.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관광과
산림청	가. 산불 나. 산사태	산림과

비고: 공동구 위험물 사고 등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별표 3]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제6조제1항제1호관련)

□ 상시대비단계

1. 가동기준: 평상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주간: 안전총괄과 야간 및 공휴일: 당직근무자

- 비고: 1.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실무반에서는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 상황전파메신저(NDMS)를 관리하며, 재난상황 시 긴급재난문자시스템(CBS)을 통하여 상황전파를 할 수 있다.

□ 사전대비단계

1. 가동기준: 호우·대설 예비특보 등 비상단계 전 기상정보 발표 시
2. 실무반 편성

통 제 관	재난총괄 부서의 장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실 무 반	안전총괄과 1명

- 비고: 1. 사전대비단계는 재난안전상황실 및 대책본부의 실무반의 기능을 병행하여 수행하되, 소관분야 업무를 추진하면서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파견 요청시 즉시 파견하여 24시간 상황근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재난총괄 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수습 부서의 직원을 파견받아 실무반원을 보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실과소 1명, 읍면 1명 비상대기 근무

[별표 4]

자연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가목 관련)

□ 비상 I 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주의보” 발표시

나. 태풍: 예비특보 발표시

다. 그 밖의 지진 및 화산 등: 규모 4.0이상 5.0미만 지진통보 또는 화산재주의보 발표 시 등

2. 실무반 편성: 12명+α

통 제 관 (재난 총괄부서의 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12+α명	
상 황관 리총괄반	반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 (2+α)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9+ α)		기획감사실(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1+α), 경제교통과(1+α), 문화관광과(1+ 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과(1+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1+α), 보건소(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다. 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자연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실과소 12명, 읍면 2명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음.

□ 비상 2단계

1. 가동기준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시

나. 태풍: 태풍주의보 발령시,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통보, 사망자 및 실종자 발생 또는 화산재정보 발표시 등

2. 실무반 편성: 19+ 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제관 (재난총괄부서의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당관 (재난수습 부서의장)	○ 재난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19+α+β명	
상황관리총괄반 (4+α명)	반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1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1)	- 행정과 직원(1명)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2+α), 안전총괄과(1+α), 경제교통과(2+α), 문화관광과(1+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과(2+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2+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 비상 3단계

1. 가동기준

- 가. 호우·대설: 기상 종합정보 중 “경보” 발표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나. 태풍: “태풍경보” 발표시, 또는 광역적인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본부장이 이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판단한 경우
- 다. 그 밖의 사항(지진 및 화산 등): 규모 5.0이상 지진 발생이 통보되고, 광역적인 피해 발생시(복합재난 등),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등

2. 실무반 편성: 24+ α+ β(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통 제 관 (재난 총괄부서의 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 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24+α+β명	
상황관리 총괄반 (5+α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재난정보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	※ 상황보고서 작성, 인명·재산피해 관리, 재난정보 모니터링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 상황관리총괄, 재난상황분석·판단시스템 운영, 대책본부 운영 행정지원, 상황실 장비운영, 재난관리시스템(NDMS) 운영 지원
	행정지원팀 (1+α)	- 행정과 직원(1+α) ※ 주요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추진,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1+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2+α), 안전총괄과(1+α), 경제교통과(2+α), 문화관광과(1+α), 산림과(1+α), 환경과(1+α), 건설과(3+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3+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 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다. 근무방법

-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잉여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총괄부서 및 주관부서 직원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3) 행정지원팀: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4)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대책본부 근무자) 인원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전 직원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5]

사회재난의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 기준 (제6조제1항제2호나목 관련)

1. 가동기준: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2. 실무반 편성: $19 + \alpha + \beta$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중에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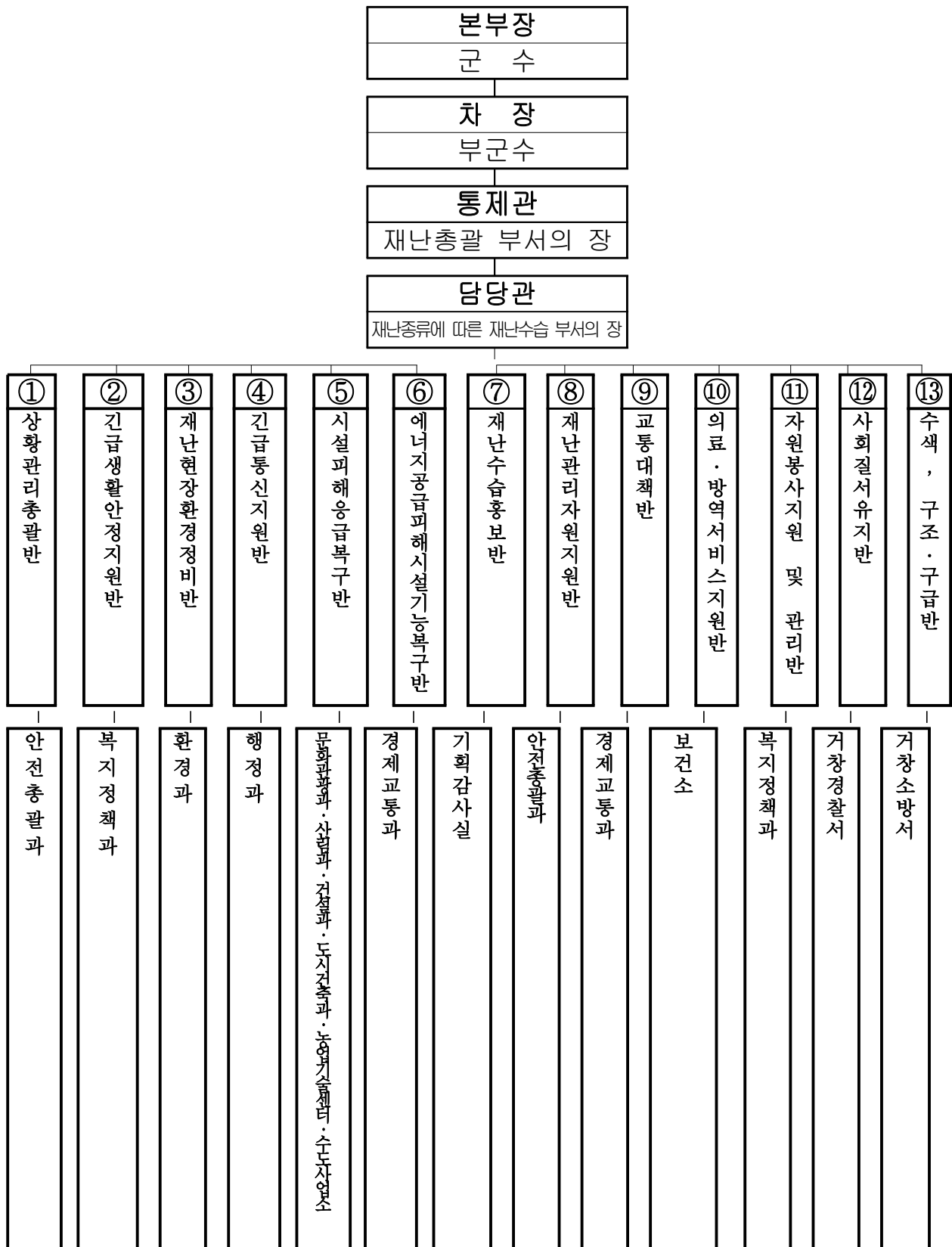
통 제 관 (재난 총괄부서의 장)	○ 재난상황총괄,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담 당 관 (재난수습 부서의 장)	○ 재난 수습업무 전반의 재난상황 관리, 실무반 임무 총괄	
근무인원	총 4+α+β명	
상황관리총괄반 (4+α명)	반 장(1)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주사
	상황관리총괄팀	안전총괄과(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2명)
	수습상황과약팀	
협업기능반(α)		기획감사실(α), 행정과(1+α), 복지정책과(2+α), 안전총괄과(1+α), 경제교통과(2+α), 문화관광과(1+α), 산림과(1+α), 환경과(α), 건설과(2+α), 도시건축과(1+α), 농업기술센터(2+α), 보건소(1+α), 수도사업소(1+α), 거창경찰서(α), 거창소방서(α)
관계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 지원반(β)		-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한국전력공사 거창지사, 한국농어촌공사 거창함양지사 등)

- ※ 비고: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협업기능반 ·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 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비상근무 인원: 상황판단 회의에 따라 전 공무원의 3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편성·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본부장은 공무원의 2분의1 비상대기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별표 6]

대책본부 구성도(제6조제2항 관련)



[별표 7]

사회재난의 지원금액 산정기준 (제20조관련)

구분	산 정 기 준
1.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1. 생계지원금: 정부양곡(80킬로그램) 5가마를 기준으로 정하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가격을 적용한다. 2. 응급구호비 및 장기구호비 등: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표에서 정하는 금액
2. 피해지역의 복구비에 필요한 지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산정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르되, 별도의 비용 산정 기준이 없는 경우 다음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1. 감정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평가 또는 사정한 금액 2. 국토교통부장관이 운영하는 건설공사 표준품셈 3. 정부에서 고시한 보상금 등에 관한 고시 단가 4.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 가격 5. 실거래 조사가격 또는 소요비용 추정가격 6. 그 밖에 피해시설물 등의 가격을 입증하는 자료확인
3.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의료·방역·방제(防除) 쓰레기 수거 활동 등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실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 [별지 제1호서식]

사회재난 피해 신고서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4일
신고인	성명(남/여)	생년월일	
	주소		
피해 내용	피해 발생위치:		
	피해 시설명:		
	피해 물량:		

「거창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피해 사실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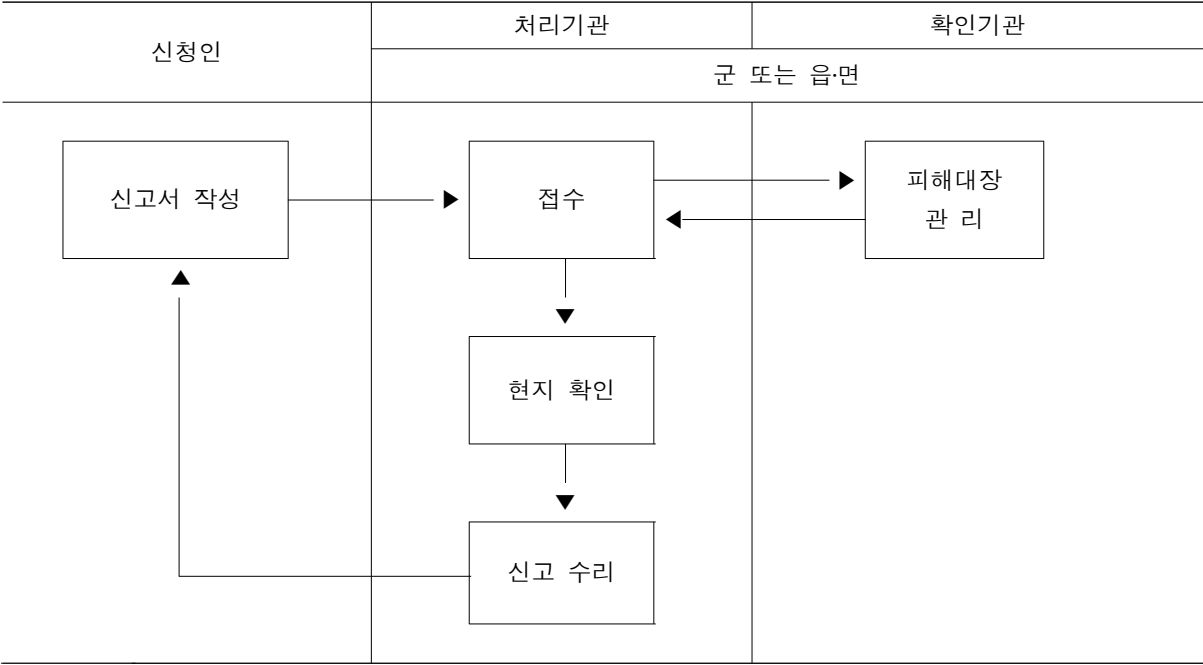
군수 또는 읍·면장 귀하

첨부서류	피해를 입증하는 사진 등의 자료 1부	수수료 없 음
------	----------------------	------------

210mm×297mm[백상지 80g/㎡]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별지 제2호서식]

[관리번호:]

피해 대장

확 인 자	중앙 직	성명	(인)
	도 직	성명	(인)
담당과장	직	성명	(인)
조 사 자	직	성명	(인)

1 총괄현황

구 분	공공시설/ 사유시설
피해위치	
피해일시	년 월 일 시
피해시설명	
피해물량	
피해액	천 원

2 피해·복구내역

피해내역	복구내역
○ 피해액 산출근거	○ 복구비 산출근거

※ 피해금액 산출의 근거가 되는 기초자료 별지 첨부 가능

③ 피해현황 사진

① “사진설명”	② “사진설명”
③ “사진설명”	④ “사진설명”